

#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

## ■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

□ 일 시 : 2013. 3. 14(목) 10:00 ~ 12:30

□ 장 소 :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: 7名(이도형,이재병,정수영,김병철,이재호,전원기,전용철의원)

※ 참석공무원 :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외 20명

건설교통국장 최현모 외 25명

### □ 부의안건

#### 1. 부개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(청원소개 의원: 이성만 의원)

⇒ **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**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함

→ 조합에 대해서도 매물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 요청 등

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

#### 2.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

(청원소개 의원: 전용철 의원)

⇒ **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**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함

→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을 원하는 양쪽 주민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

#### 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변경 결정안(서구 원창동)

⇒ **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**

4.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)변경 결정안(소규모 단절토지 등)

⇒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

5.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⇒ 원안가결

6. 제2외곽순환(인천~김포)고속도로 1-1공구 지하화 청원  
(청원소개 의원: 안 병 배 의원)

⇒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함

→ 본격적인 공사 시행 전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
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진의와 협의를 해 줄 것을 의견으로  
제시

7.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

⇒ 원안가결

일 시	차수	심 사 안 건	비 고

報告者 : 建設交通專門委員